



보도	2026.2.27.(금) 석간	배포	2026.2.26.(목)
담당부서	조사1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국 장 김회영 (02-3145-5550)
		담당자	부국장 장경필 (02-3145-5552)
	조사2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 류태열 (02-3145-5650)
		담당자	팀 장 형남대 (02-3145-5653)
	조사3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 장정훈 (02-3774-8570)
		담당자	팀 장 강성곤 (02-3774-8591)

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안내 및 집중감시 계획

- ◆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(97.9%)이 12월 결산임에 따라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(상장폐지 등)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.
 -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(19개사, 24건)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79.1%(19건)가 1~3월 중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
- ◆ 상기 대상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①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,
 - ②대규모 자금 조달(유상증자·전환사채 발행 등)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, ③최대주주·경영진 변경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으며,
 - 대주주 및 임원 등은 이러한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려 하기 보다는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.
- ◆ 금융감독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감시하여 혐의 발견 시 엄중조치할 예정입니다.
 - 투자자들께서는 위와 같은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, 상장법인 대주주·임직원께서도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.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특징

1

불공정거래 유형

◆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는 결산이 진행되는 매년 1~3월에 집중 발생하며, 감사의견 등 정보를 공개 전 매매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□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·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(미공개정보·시세조종·부정거래)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*(13.7%)으로,

* ('23년) 6건 → ('24년) 9건 → ('25년) 9건

-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대부분(19건, 79.2%)이 1/4분기에 발생하였으며, 나머지 사건(5건, 20.8%)도 반기검토 등이 진행되는 3/4분기에 발생하는 등 회계감사 시기와 겹칩니다.
- 불공정거래 종류별로는,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6건(67%)으로 가장 많고, 상장폐지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(6건, 25%), 시세조종(2건, 8%) 사건도 있었습니다.

3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현황

(단위: 건, %)

구분	'23년		'24년		'25년		합계	
	사건	비중	사건	비중	사건	비중	사건	비중
전체	67		58		50		175	
결산 관련	6	(100%)	9	(100%)	9	(100%)	24	(100%)
미공개	6	(100%)	6	(67%)	4	(44%)	16	(67%)
부정거래	-	-	3	(33%)	3	(34%)	6	(25%)
시세	-	-	-	-	2	(22%)	2	(8%)

◆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사용된 정보는 대부분 감사의견 부적정·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입니다.

□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대부분(14건, 87.5%)은 감사의견 부적정,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였으며,

-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주식을 미리 매수한 호재성 정보 이용 사례도 있었습니다.

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(16건)의 중요정보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'23년	'24년	'25년	합계(비중)
악재성	5	5	4	14(87.5%)
감사의견 비적정	3	-	2	5(31.3%)
경영실적 악화	2	5	2	9(56.3%)
호재성	1	1	-	2(12.5%)
합계	6	6	4	16(100%)

◆ 주된 혐의자는 최대주주,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입니다.

- 혐의자 68명 중 57명(84%)이 당해 회사 임원(35명), 최대주주(18명), 직원(4명) 등 내부자였으며, 나머지(11명, 16%)도 1차 정보수령자 등 회사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인되었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혐의자 대부분(66명, 97%)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조치하였습니다.

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

(단위 : 명)

혐의자 유형	'23년	'24년	'25년	합계(비중)
최대주주	5	5	8	18(26%)
임원	5	7	23	35(51%)
직원	1	3	-	4 (6%)
기타(1차 정보수령자 등)	3	1	7	11(16%)
전체	14	16	38	68(100%)

※ '23~'25년 중 금감원이 적발한 결산 관련 3대 불공정거래 발생기업 19개사를 분석한 결과로, 이와 같은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

① **(경영실적 악화)** 해당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발생 직전 장기 실적 부진(14개사), 적자 전환(4개사)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·자금사정이 열악합니다.

○ 이들 기업은 부채비율(평균 212%) 등이 상장사 평균('25.9말 112.8%)을 크게 상회하여 원리금 지급연체(2개사), 기업회생절차 개시(4개사), 파산신청(1개사) 등에 이르기도 하였고,

- 부동산, 자기주식 등 대규모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, 유상증자(7개사), 전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(9개사) 등을 통해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을 시도*하기도 하였습니다.

*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한 12개사 중 5개사는 중도 철회

② **(최대주주·경영진 변경)** 해당 기업은 불공정거래 발생 전에 최대주주·경영진이 교체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○ 이들 기업들은 재무구조 악화 및 경영실적 부진에 따라 최대주주·경영진 변경이 빈번하여 경영권이 불안정*하며,

* 불공정거래 발생 1년 내 최대주주(3개사) 또는 대표이사(7개사) 변경

- 교체된 최대주주·경영진이 이를 감추거나 부실기업 이미지 탈피 등을 위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(7개사)도 확인되었습니다.

○ 또한, 불공정거래 발생 직전 최대주주·경영진 교체와 더불어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정관에 추가*하기 위하여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경우(4개사)도 있었습니다.

* (예) 건설업체가 반도체 사업 추가,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2차전지 사업 추가, 바이오·신약개발업체가 AI 사업 추가 등

③ (기타 사항)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* 코스닥 상장사**였습니다.

* 19개사 중 13개사가 자본금 200억원 이하

** 19개사 중 16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당시 코스닥 상장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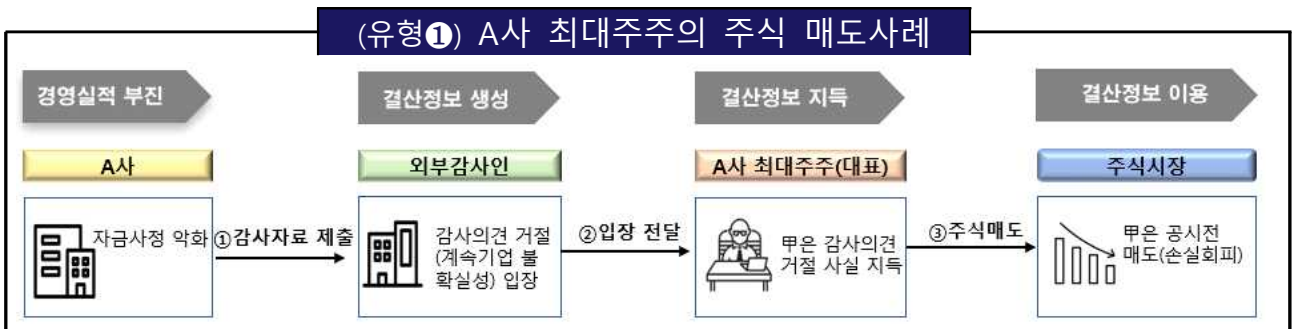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*가 많았습니다.

*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비적정 : 10개사, 제출 지연 : 5개사

II.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 사례

☑ (유형 ①) 감사의견 거절 공시 前 보유주식 매도 (미공개정보 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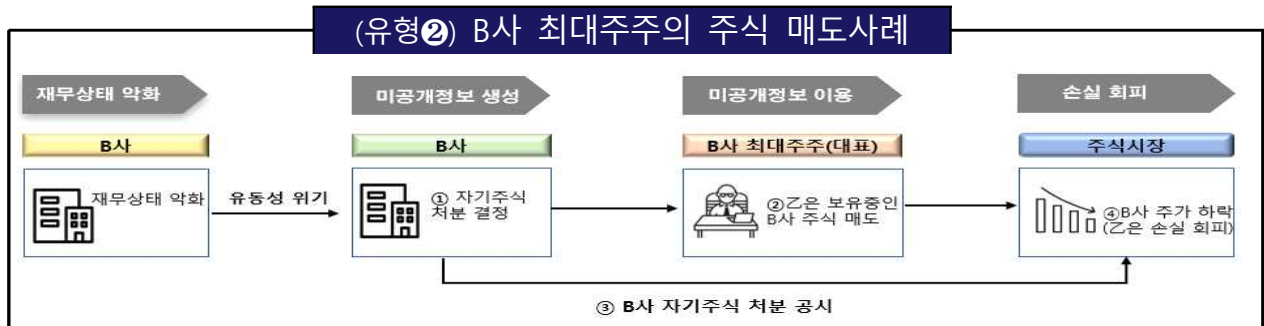
- A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甲은 2월경 동사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(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)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
 -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 및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매도하여 손실을 회피



☑ (유형 ②) 실적 악화로 인한 자기주식 처분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 매도(미공개정보 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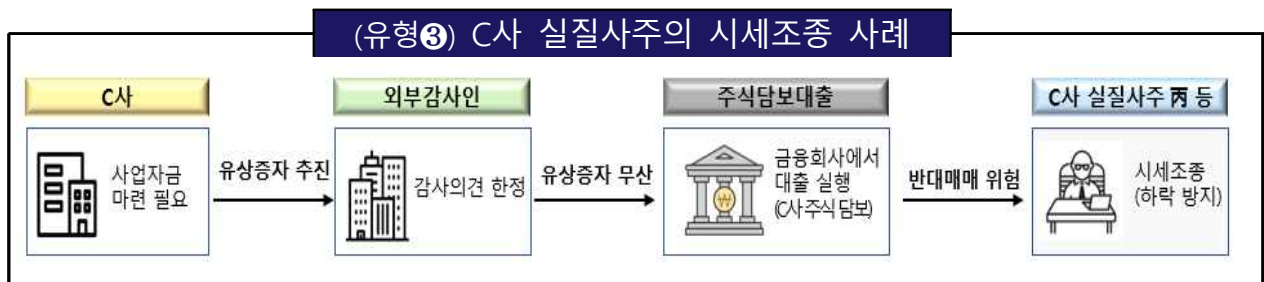
- B사는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악화로 1~3월초 금융회사 대출 거절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동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,

- B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乙은 동 미공개정보를 생성·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한 B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



☑ (유형 ③)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상 반대매매를 모면하기 위한 시세의 인위적 하락 방지(시세조종)

- C사 실질사주 丙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C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으나, 다음 해 초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 제공주식의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
-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C사 임원 丁 및 증권사 직원 戊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여 주가를 조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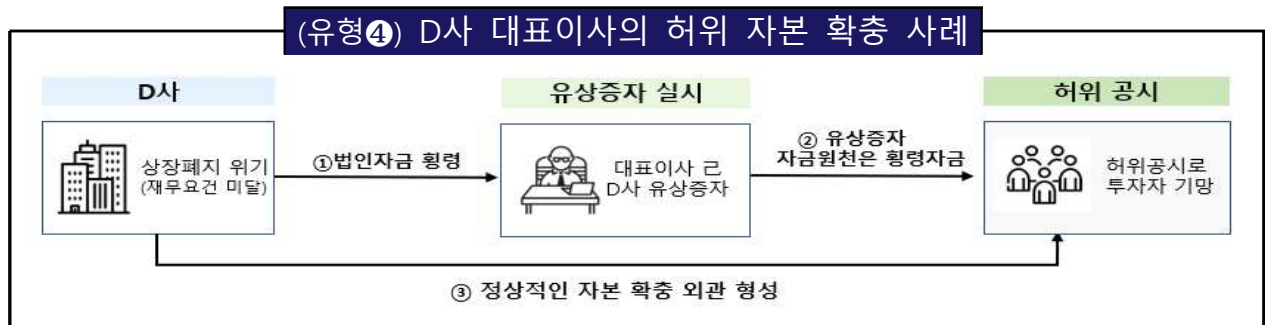
☑ (유형 ④) 결산일 도래 직전 허위 자기자본 확충(부정거래)

- D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*,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** 등이 우려되자

*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실비율 미충족 등

**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으로 한국거래소 벌점 누적

- D사 대표이사 己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D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



Ⅲ. 기업 내부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

① 기업 내부자는 특히 결산 시기에는 공시 등 업무 진행 및 주식거래 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회사 대주주·임직원 등이 미리 지득한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개 전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상장회사 임원·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 거래 시 매매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공시하여야 하며, 위반 시 과징금(최대 20억원)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미확인정보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 추진, 외부자금 조달 등 허위공시·풍문이 발생할 수 있으니, 투자 시 미확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·제재받을 수 있습니다.

③ 적극적인 제보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□ 누구든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(30억원)을 폐지하고 적발·환수된 부당 이득·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추진 중 (26.2.2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)

※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(금융감독원)

▣ 인터넷 :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② 민원신고 → ③ 불법금융 신고센터 → ④ 증권불공정거래 신고

▣ 우 편 :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(우편번호 07321)

IV. 향후계획

□ (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집중감시) 금융감독원은 금번 결산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,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감시하고

○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하여 신속·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□ (예방활동 강화)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반 사례 전파 및 관련 제도·규제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